

성과공유 샌드박스 및 성과공유 유형 확대 운영방안 안내

◇ 「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」 고시(중기부, '24.6.21)에 따른 제도 개편사항 중 '성과공유 샌드박스' 및 '성과공유 유형 확대'에 대한 운영방안을 안내하고자 함

1 성과공유 샌드박스(운영요령 제8조의3)

□ 내 용

- 혁신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·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제도 성과공유 과제로 인정

□ 운영 방안

① 기업간 수위탁거래관계만 해당되지 않는 과제

→ 별도 심사없이 일반 과제와 동일한 절차로 샌드박스 과제로 등록

*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(benis) 내 '성과공유 샌드박스 메뉴(신설)'에 과제 등록

일반 과제	· 위탁기업 · 수탁기업	샌드박스 과제	· 등록기업 :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관 · 협력기업 : 중견기업, 중소기업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

② 성과공유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과제

→ '혁신적인 성과공유 모델'을 전제로 과제 특성 상 수위탁거래 외 다른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

* 혁신적인 성과공유 모델 및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점 입증 필요(심의위 연 1회 개최 예정)

□ 유의 사항

- 상생법 제8조에 따른 공식적인 성과공유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체결, 상생협력기금 활용*, 상생법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불가

* 상생법 제20조의5제5항1호에 따른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 중 대·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성과공유제에 해당하지 않음

- 단,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는 일반과제와 동일하게 반영

2 성과공유 유형 확대(운영요령 제6조의2)

□ 내 용

- 기존 '현금배분', '물량 및 매출 확대'에서 '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·평가가 가능한 성과물'의 성과공유 유형도 인정

* 단순 교육, 건물 제공 등 기업간 성과공유로 판단이 곤란한 공유방식은 불인정

□ 운영 방안

① 현금성 공유 유형

- 정부발행 상품권(온누리상품권, 지역사랑상품권 등), 동반성장몰 포인트, 수수료 인하 등 금액이 명확하게 증빙되는 공유방식 인정

* 정부 및 지자체 외에 기업(기관)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및 포인트는 불인정

② 경제적 가치 환산평가가 필요한 공유 유형

-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된 빅데이터, 제조혁신의 결과물인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이전 등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(특수관계인 제외)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제적 가치 평가 금액에 한해 인정

* 예) 특허청 지정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(33개), 과기부 지정 데이터 경제적가치 평가 전문기관(4개) 등

※ 향후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'성과공유 경제적 가치 평가 가이드라인' 마련 예정('25년)

□ 유의 사항

-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(benis) 과제등록 시, 성과공유 방식으로 '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·평가가 가능한 성과물' 선택 필수
- '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·평가가 가능한 성과물' 유형으로 공유한 금액도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성과공유금액에 반영

※ 이 운영방안은 '24. 10. 7(일)부터 시행